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990호

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고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조제1항제2호 및 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)」제38조제4항,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(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)」제93조제4항에 따라 "건설공사 표준품셈"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7. 31.
국토교통부장관

1. 목적
 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

2. 적용일시 : 2025년 7월 31일부터

3. 적용범위
  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·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

4. 구성 및 개정내용
   “붙임 자료 참조”

5. 관리기관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(☎031-910-0900)

6. 기　　타
  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 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, 뉴스·소식/공지사항)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(https://cost.kict.re.kr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